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요약편)

저자 : 컴플라이언스RM팀

발행일 : 2023. 12. 28.

Version : 3.0 기준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요약편) 목차

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이해

1. 한페이지로 보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II. 불공정거래 행위

2. 한페이지로 보는 『불공정거래행위』

III. 계열사 관련 공정거래

3. 한페이지로 보는 『부당지원행위』

IV. 경쟁사 관련 공정거래

4. 한페이지로 보는 『부당한 공동행위』

V. 소비자 관련 공정거래

5-1. 한페이지로 보는 『표시·광고법』

5-2. 한페이지로 보는 『약관법』

VI. 협력사 관련 공정거래

6. 한페이지로 보는 『하도급거래 관련 규제』

VII. 기업집단 규제정책 및 지주회사 제도, 공시

7-1. 한페이지로 보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규제』

7-2. 한페이지로 보는 『공정위 공시제도』

VIII. 공정거래법 위반 시 사건처리 절차

8. 한페이지로 보는 『공정거래법 위반시 사건처리 절차』

1. 한페이지로 보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요약

Compliance Program

CP(Compliance Program)란, 경쟁 주체인 기업이 경제활동 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도입·운영하는 프로그램**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준법의식을 기업의 문화로 체화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자진 시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동일한 법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법개정 진행 현황]

2022.05 - 現 정부 국정과제 『기업의 자율준수 문화확산을 위한 CP활성화』

2023.05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법적 근거 마련 [법 제120조의2 신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 결과 등에 근거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2024.06 - CP 운영 사업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하위규정 발표 예정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 포상/지원 등)

필요성	① 기업의 경쟁력과 공정거래 능력 강화, ② 법위반에 따른 기업 손실을 사전에 예방 ③ 대내외 신인도 제고, ④ 법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8대 요소	① CP운영의 기준과 절차의 수립, ② 최고경영자의 CP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의지의 천명 ③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④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 ⑤ 교육프로그램, ⑥ 사전감시체계 ⑦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⑧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경감제도	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불가피하게 혹은 임직원의 실수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제재 수준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

CP등급평가 및 감경제도

"CP 등급평가"란 CP 도입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CP 운영실적 등을 기준으로 기업별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

CP등급	AAA	AA	A
직권조사면제	2년	1.5년	1년
CP등급	AAA	AA	A
시정명령 공표	공표면제	간행물 공표 : 공표크기, 매체수를 1회에 한하여 1단계 하향 사업장 및 전자매체 공표 : 공표 기간 단축	

참고) 공정거래법 제45조 /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등

2. 한페이지로 보는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요약

불공정거래행위

(법 제45조)

위법성 판단

유형 (일반)

(비 제45조, 시행령 별표2)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법성은 공정거래저해성으로 판단하며, 공정거래저해성은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으로 구성된다.
 - 경쟁제한성 : 당해 행위로 인해 시장 경쟁의 정도 또는 경쟁사업자의 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음을 의미
 - 불공정성 :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음을 의미
- 판단 방법
 - 부당하게 : 경쟁제한성 · 불공정성의 효율성 증대와 소비자 후생증대효과 등을 비교衡量 후 큰 경우 위법
 - 정당한 이유없이 : 행위의 외형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 저해성 인정

(1) 위법성 - 경쟁제한성 : 경 / 불공정성(수단) - 불(수단) / 불공정성(내용) - 불(내용)
 (2) 안전지대 - 경쟁제한성이 있는 경우만 적용 (참여사업자 시장점유율 합계 10% & 연간매출액 50억원 미만)

(1) 위법성 (2) 안전지대

거래거절	공동의 거래거절	경쟁사업자 배제	경	○
	기타의 거래거절	부당고가매입	경	○
차별적 취급	가격 차별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경	○
	거래조건 차별		경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경	○
	집단적 차별		경	○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영매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경	○
	부당고가매입		경	○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불(수단)	X
거래강제	끼워팔기	구입강제	경	○
	사원판매		불(수단)	X
	기타의 거래강제		불(수단)	X
거래상 우월적 지위남용	이이익제공강요	경영간섭	불(내용)	X
	판매목표강제		불(내용)	X
	불이익 제공		불(내용)	X
	경영간섭		불(내용)	X
	배타조건부 거래		경	○
구속 조건부 거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경	○	
	기술의 부당이용	기타 사업활동 방해	불(수단)	X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불(수단)		X	
거래저 이전방해	불(수단)		X	
기타 사업활동 방해	불(수단)		X	

유형 (특수)

(시행령 별표2의 비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보야 또는 행위에 관한 특수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관계행정기관장의 의견반영하여 고시 재정 가능
 *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등

위반시 제재

구분	과징금	벌칙	비고
거래거절 ~ 사업활동 방해	관련 매출액의 4% 이내 (매출액이 없는 경우 10억 이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동시적용 가능
부당지원 (특수관계인 포함)	관련 매출액의 10% 이내 (매출액이 없는 경우 40억 이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3. 한페이지로 보는 『부당지원행위』

계열회사와 내부거래 발생 시
알기 쉽게 다가가는 내부거래 프로세스 가이드』로 할 일을 체크 후 반드시 컴플라이언스RM팀과 협의 요!

부당지원행위 요약

- 법조항
- 지원주체
- 지원객체
- 규제목적

규제내용

정상가격
1) 동일 상황,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 거래가격
2)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 차이 확인, 합리적 조정
3) 유사사례가 없는 경우 : 일반적 경제/경영상황 고려, 보편적으로 선택 가능한 현실적 가격(추정)

위반 시 제재

일감 몰아주기 적용제외

부당지원 행위 금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모든 사업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계열회사에 한정되지 않음)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는 부당지원행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법 제47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 또는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주식 보유한 계열회사 기업집단 특수관계인(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금지
<p>1. 부당한 자금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자금·대여금 등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정상가격*)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 및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제공 <p>2. 부당한 자산거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이나 기타 자산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 및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p>3. 부당한 임대차 거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을 무상제공, 정상임대료보다 상당히 낮은 임대료로 임대, 정상임대료보다 상당히 높은 임대료로 임차 및 상당한 규모로 임대차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제공 <p>4. 부당한 상품용역거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품·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 및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p>5. 부당한 인력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 및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제공 <p>6. 거래단계를 추가하거나 거처 거래(통행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와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지원객체를 거래단계에 추가 또는 거처 거래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여 지원객체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제공 <p>7. 안전지대 (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상가격과 차이가 7% & 해당연도 총거래금액 30억원 미만 상품용역거래는 거래총액이 100억원 & 거래상대방 평균매출액의 12% 미만 	<p>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 거래 : 가자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 (회계 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자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의 금융상 편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자산·상품용역 거래 : 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 인력 거래 : 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 (제공객체가 제공주체 또는 해당 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급여·수당등(실제지급급여)이 해당 인력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제공주체와 제공객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수당등(정상급여)보다 적은 때 성립) 안전지대 : 거래조건 차이 7% 미만, 연간 거래금액 50억원(상품·용역 거래는 200억) 미만 <p>2. 사업기회의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로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 안전지대 : 1)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2)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 <p>3.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과정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일감 몰아주기)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 안전지대 : 연간 거래총액 200억원 미만, 거래상대방 평균 매출액 12%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조치 : 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법 위반상태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과징금 : 직전 3개 사업년도 평균매출액의 10% 이내 (매출액이 없는 경우 40억원 이내)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양벌가능) 	

구분	내용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적 특성상 전유방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거래,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 공급/구매(호환성 요건 : 부품교환, 시설확충 시, 해당물품 제조/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받을 경우 호환성이 떨어짐) (신설) 회사의 기획·생산·판매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산업연관성이 높은 계열회사로부터 공급 주된 사업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 구조조정 등을 위해 일부 사업을 전문화된 계열회사가 전담 및 관련 거래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업무 이해도 및 숙련도 향상 등 인적·물적 협업체계가 구축 거래 필요한 전문지식, 인력보유현황, 대규모/연속적 사업의 일부로서 밀접한 연관성 또는 계약이행의 신뢰성을 고려한 계열회사 거래 (계열회사의 지적재산권: 계열회사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지재권이나 독자기술 보유하여 외부거래 시 거래목적 달성 불가) (신설)
보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사적 지원관리시스템, 공장, 연구개발 또는 통신기반시설 등 필수시설의 구축운영, 핵심기술의 연구개발·보유 등 관련 거래 과정에서 영업비밀·구매 등과 관련된 기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등 핵심적인 경영정보에 접근 가능
긴급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긴급히 사업상 필요한 불가피한 거래 (의적요인: 불가항력이 아니더라도 객관적/합리적으로 예견하기 어렵거나, 언저지 불합리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회피 불가한 외부요인으로 발생) (일체 지급불능, 법정관리, 워크아웃 발생, 전산망 또는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시설 화재 등 소비자 피해 및 사업수행 방해로 신속대처 필요)(신설)

4. 한페이지로 보는 『부당한 공동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요약

담합

(법 제40조 제1항)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 과징금: 해당프로젝트 매출액의 20% * 처벌: 검찰고발 및 법인/개인 양벌 가능

- 1) 2인 이상의 사업자
- 2) 가격고정 (인상/인하/유지), 입찰담합, 산출량의 결정, 제한, 거래상대방, 지역 분할은 당연 위법!
- 3) 명시적 합의(협약, 결의, 양해각서, 동의서), **목적적 합의, 실행하지 않아도 합의만으로 성립, 직 · 간접적 의사연락 정보연락 및 합의없이 설명되지 않는 경우 정황상 합의가 추정**
- 4) 타사에 담합을 교사해도 성립 (단순방조는 불포함)
- 5) 공정거래법상 동종업체간 수평적 담합만 성립, 수직담합은 설계사 및 협력업체 가담한 경우도 성립

입찰담합

(법 제40조 제1항 8호)

① 입찰가격 담합	입찰가격 사전결정 및 정보교환
② 낙찰예정자의 사전결정 (들러리 협조)	연고권 주장하여 특정업체 낙찰협조, 입찰내역 제공 · 협조, 특정 업체 낙찰 통지 · 협조, 사례금 · 벌금 부과
③ 경쟁입찰계약 수의계약 유도	의도적인 높은가격 입찰, 들러리 입찰로 수의계약 유도
④ 수주물량 등의 결정	업체간 사전 공구분할, 입찰참가 배분

정보교환담합

(법 제40조 제1항 제9호)

사업자간 " 가격, 생산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¹⁾를 주고받음으로써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경우도 담합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추정도 가능²⁾

- 1) 1. 원가 2. 출고량, 재고량 또는 판매량 3.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 (시행령 제44조 제2항)

▲ 경쟁상 민감한 정보

- 2) 1. 외형상의 일치가 존재하고 2. 그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때

정보교환·협력 가이드

① 일반적인 시장에 Open된 영업정보 위주로 교환 (경쟁상 민감한 정보교환 시 주의)	업체별 참여 공구정도의 시장현황 파악 정보, 회사 일반정보, 동향정보 등 교환은 가능
② 업계모임 참석 시 담합 관련 논의 시, 그 자리를 빠져나와야 함.	참석자에 이탈통지 및 컴플라이언스RM팀 협의
③ 동종사 정보교환 시 입찰프로젝트 등 경쟁을 제한하는 정보의 논의는 금지	입찰담합 관련, 경쟁사 배제, 들러리 등, 담합을 전제로한 공동협력 등 정보의 논의금지
④ 입찰관련 공동협력 관련 협의는 가능	공동협력은 나눠먹기가 아님

5-1. 한페이지로 보는 『표시·광고법』

표시광고법 요약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당한 표시광고	세부내용
① 거짓·과장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 (법 제3조 제1항 제1호)
② 기만적인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법 제3조 제1항 제2호)
③ 부당하게 비교하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상품 등이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
④ 비방적인	다른 사업자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 (법 제3조 제1항 제4호)

고사·지침

심사지침	대표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위반사례
부동산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① 현재 이용할 수 없는 교통수단이나 도로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함으로써 교통여건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②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③ 주택, 상가 등의 건축물 또는 점포의 구조, 재료, 부속, 인테리어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④ 분양시 용자내용 및 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⑤ 건본주택에 사용된 재료 또는 구조가 사정상 변경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실제의 것과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
	⑥ 건물인증(정식인증, 예비인증 포함)표현과 관련하여 하위등급을 받았음에도 상위등급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동산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은 부동산과 관련된 표시·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한다.

위반시 제재

(법 제7조, 제9조, 제17조)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출액의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 제9조]

표시광고 실증

(법 제5조)

사업자등은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은 실증할 수 있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에게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증자료의 제출기간은 **15일** 이내이다.

대응방안 : 발주처와의 계약관계 상 당사 분양업무 및 책임·의무 확인 / 각종 홍보자료 (분양홍보, 시공 참여제안서 등) 생성시 홍보요인의 적정성(부당한 표시광고)을 판단하고 근거자료를 보관하여 공정위 실증 요청시 컴플라이언스RM팀과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5-2. 한페이지로 보는 『약관법』

약관법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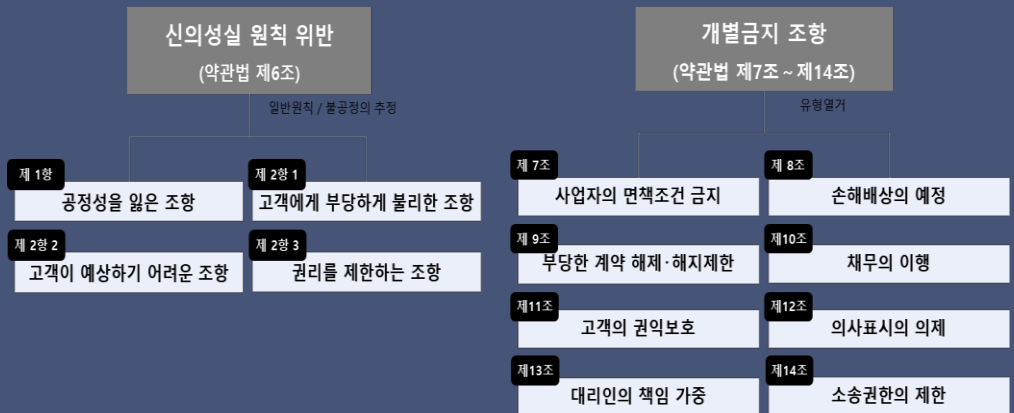
약관법 개념·정의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명칭, 형태,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체결을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사전에 준비한 계약내용 [약관법 제2조 제1항]

불공정한 약관을 규제하는 이유

거래를 신속·간편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경제사회 구조의 복잡·다양화에 따른 법의 불비를 보완하기 위하여 약관의 사용이 보편화됨 그러나 약관 작성 주체가 대부분 조항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성하거나 대부분의 고객이 약관을 알지 못하여 자기 의사에 의해 계약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자유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 고객 등의 진정한 의사를 보호하고 약관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불공정약관의 규제가 필요한 것임**

부당성 판단기준 불공정 약관조항



위반시 제재

시정명령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5천만원 이하)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자
과태료 (1천만원 이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과태료 (5백만원 이하)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양벌규정	행위자 처벌 및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벌금형

약관법 시정사례

시정 前 약관 조항 (예시)	시정 後 약관 조항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체대 중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 룸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 하며, 이는 공사시행 과정의 하나로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공개되더라도 "을"은 이에 대한 피해보상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아파트 공사 진행을 위하여 샘플하우스 세대를 건립할 경우 해당 동호 수는 당사에서 임의로 정하며, 이에 대하여 해당 동호수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세대는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Mock up 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하기로 한다.

6. 한페이지로 보는 『하도급거래 관련 규제』

하도급법 요약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하도급거래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건설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 건설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하도급대금)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도급법 적용범위/대상	세부내용
① 원사업자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견기업 포함) -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매출액에 상관없이 원사업자로 본다
② 수급사업자 범위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 및 연간 매출액 3천억 미만의 중견기업자 (제조위탁 : 800억~1,500억원 이하 / 건설위탁 : 1,000억원 이하 / 용역위탁 : 400억원 이하)
③ 하도급법 적용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위탁 :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 2. 제조위탁 : 물품의 제조(가공), 판매, 수리 또는 건설 중 하나의 행위를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3. 용역위탁 : 지식/정보성고물의 작성 또는 역무(役務)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

주요 의무 및 금지사항

원사업자의 의무사항(10개)

- ① 서면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② 선급금의 지급 ③ 내국신용장의 개설 ④ 검사 및 검사결과의 통지 ⑤ 하도급대금의 지급
⑥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⑦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⑧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⑨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⑩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원사업자의 금지사항(13개)

- ① 부당특약 설정 ②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③ 물품 등의 구매강제 ④ 부당한 위탁취소 ⑤ 부당반품 ⑥ 감액
⑦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 결제 청구 ⑧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⑨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⑩ 부당한 대물변제
⑪ 부당한 경영간섭 ⑫ 보복조치, ⑬ 탈법행위

하도급 벌점

구분	세부내용														
벌점 부과기준	<p>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한다.</p> <p>1) 법 위반 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 : 서면, 감액, 대금, 보복/탈법, 기타</p> <p>2)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경고(서면)</th> <th>경고(신고)</th> <th>시정권고</th> <th>시정명령</th> <th>과징금</th> <th>고발</th> </tr> </thead> <tbody> <tr> <td>벌점점수</td> <td>0.25</td> <td>0.5</td> <td>1.0</td> <td>2.0</td> <td>2.5 (2.6*)</td> <td>3.0 (5.1*)</td> </tr> </tbody> </table> <p><small>※ 원, 투스트라이크아웃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4조), 부당한 감액(11조), 기술자료 유용·유용 행위(12조의제3항1호), 보복조치 금지(19조) 위반시 적용</small></p>	구분	경고(서면)	경고(신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벌점점수	0.25	0.5	1.0	2.0	2.5 (2.6*)	3.0 (5.1*)
구분	경고(서면)	경고(신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벌점점수	0.25	0.5	1.0	2.0	2.5 (2.6*)	3.0 (5.1*)									
벌점 누산기준	누산점수는 과거 3년간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모든 경감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합하여 정한다. (누산점수 = 누적벌점-경감점수+가중점수)														
벌점 누산에 따른 행정처분	<table border="1"> <thead> <tr> <th>행정처분</th> <th>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th> <th>영업 정지 요청</th> </tr> </thead> <tbody> <tr> <td>내용</td> <td>공공분야 입찰 참가자격 제한 (6개월)</td> <td>민간 및 공공공사의 영업활동 정지 (6개월 이내)</td> </tr> <tr> <td>관계기관 요청시기</td> <td>누산점수 5점 초과 시</td> <td>누산점수 10점 초과 시</td> </tr> </tbody> </table>	행정처분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영업 정지 요청	내용	공공분야 입찰 참가자격 제한 (6개월)	민간 및 공공공사의 영업활동 정지 (6개월 이내)	관계기관 요청시기	누산점수 5점 초과 시	누산점수 10점 초과 시					
행정처분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영업 정지 요청													
내용	공공분야 입찰 참가자격 제한 (6개월)	민간 및 공공공사의 영업활동 정지 (6개월 이내)													
관계기관 요청시기	누산점수 5점 초과 시	누산점수 10점 초과 시													

7-1. 한페이지로 보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규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규제 요약

1. 기업집단 지정제도

① 기업집단

- 동일인(사람 또는 회사)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

② 기업집단 규제정책의 적용

-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및 시장경쟁 저해 방지 등 공정 시장경쟁 조성을 위해 매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및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을 지정하여 의무 및 규제를 적용

③ 기업집단 신고 등 의무사항

구분	내용
기업집단 지정 등 자료제출 (법 제 31조)	• 대규모기업집단 시책 적용대상 확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에 관련자료(일반연황, 재무 등) 제출
계열회사 편입 및 제외 신고 (법 제32조)	• 기업집단 지정 이후 계열회사 편입/제외 변동 발생시, 기업집단 시책 적용대상 변동을 위한 신고
기업결합 신고 (법 제11조)	• M&A 등의 기업결합은 사전에 신고하여 공정위가 시장경쟁 제한성을 심사하며 승인시에만 기업결합 가능
공시제도 (법 제26조~29조)	• 기업의 이해관계자(주주 등)에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주요사항을 공시

④ 기업집단 신고 등 규제사항

구분	내용
상호출자 금지 (법 제21조)	• 실질적인 출자없이 계열회사 확대 방지를 위해 2개의 계열회사가 상호간 주식을 보유하는 출자행위 금지
순환출자 금지 (법 제22조)	• 계열회사 부실에 따른 연쇄적인 악순환 방지를 위해 3개 이상의 계열회사가 상호 연결된 출자고리 형성 금지
채무보증 금지 (법 제24조)	• 계열회사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회사간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채무보증 금지
부당지원행위 금지 (법 제45조)	• 계열회사 및 공익법인 등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경제상 이익이 제공되도록 자금, 자산, 상품·용역 등을 거래하는 행위 금지

3. 계열회사 편입 및 제외신고

구분	계열편입	계열제외
지분율 요건	•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30% 이상(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이며, 최다 출자자	• 계열편입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회사
지배력 요건	• 동일인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① 임원 선임 : 대표이사 임명 또는 등기임원 50% 이상 (선임권 보유 포함) ② 주요 의사결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③ 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가 지배하는 회사와 임원겸임 •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거래 또는 채무보증 관계 •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 인정되는 회사	• 계열편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① 출자자간 합의/계약 등에 따라 동일인관련자* 외의 자가 사실상 경영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② 동일인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친족독립경영) ③ 임원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임원독립경영) ④ 최다출자자가 2인 이상으로써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다고 인정되는 회사 i. 사업구조조정을 위해 연몰출자 또는 합병 등에 의한 방법으로 설립된 회사 ii. 민투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법인 ⑤ 파산 또는 회생절차 진행중인 회사 등
공정위 활동	• 위장 계열사 등 계열편입/제외 수시 조사	
위반시 제재	• 과태료 : 사업자 - 1억원 이하 / 임직원 등 개인 - 1천만원 이하 •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시 계열편입 허위 또는 누락으로 추가 제재 Risk 존재함	

4. 기업결합 규제 및 신고·유형

구분	내용		
신고 기준	• 기준1 :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 - 신고회사 : 3,000억원 이상 - 상대회사 : 300억원 이상 -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일 경우, 기업집단 전체의 자산 또는 매출액 합계하여 산정 - 외국회사의 경우, 국내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 기준2 : 거래금액(인수 재무합계 포함) ≥ 6,000억원		
신고 예외	•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회사의 설립 or 주식 20% 이상 (상장사 15%) 취득 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회사 ①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 ②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시행회사 ③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조사	• 기업결합 신고위반 또는 마심사 기업결합 수시 조사		
제재	• 과태료 : 사업자 - 1억원 이하 / 임직원 등 개인 - 1천만원 이하		
구분	내용	계열시간 결합 시	신고시기
주식 취득	① 발행주식 20%(상장사 15%) 이상 취득 ② 추가주식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X	
합병	타사와 신설·흡수·분할합병 하는 경우	O (간이신고)	(사전)
영업 양수	① 타사의 영업 양수/임차 ② 경영의 수임 ③ 타사의 영업용 고전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 양수	O (간이신고)	계약 또는 주총 의결일 등 이후, 기업결합일 이 전
회사설립 참여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X (특수관계인외 참여시 신고)	
임원겸임	대규모회사의 임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겸임	X	(사후) 선임의결일 30일 이내

2. 기업집단 지정 등 자료제출

구분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주식소유 및 채무보증 현황 자료 제출
대상	• 기업집단 내 소속회사 및 비영리 법인	
시기	• 1차 : 3월 (주총 전 중간결산 자료 기준) • 2차 : 4월 (결산 주총 완료 후, 최종 자료 기준)	• 정기 : 5월 • 비정기 : 계열편입 시 편입 통지 이후 (편입 회사)
제출 자료	• [대표회사] 동일인 및 친족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 [소속회사] 회사 현황(재무, 임원, 주주 등), 내부지분율, 비계열사 주식보유 현황(15% 이상) 등	• [대표회사] 지배구조 현황(지분도) • [소속회사] 주식소유 현황, 채무보증 현황, 확인서 등
공정위 활동	• 대규모기업집단 시책 적용대상 확정 (5월) • 계열편입 위반사항 점검	• 주식 및 채무보증 현황 발표 • 기업집단내 출자규제 및 채무보증 현황 점검
위반시 제재	•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에 따라 경고~고발 (동일인) • 벌칙 :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 벌칙 : 1억원 이하 벌금

7-2. 한페이지로 보는 『공정위 공시제도』

공정위 공시제도 요약

제도 취지

공시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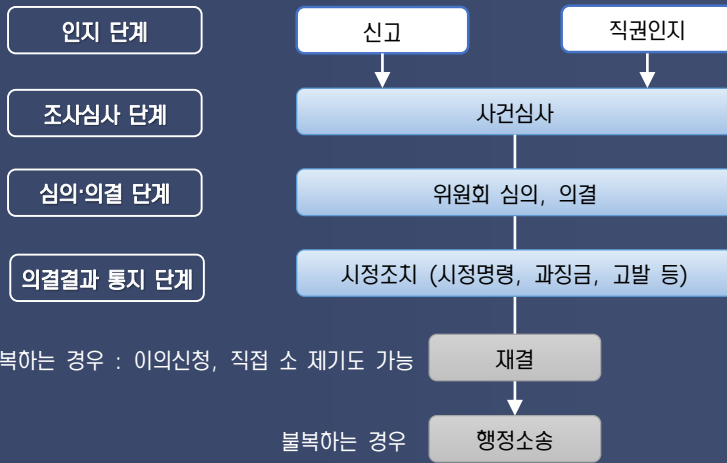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내부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를 도입, 기업집단현황 공시는 연공시와 분기공시를 통해 기업은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고, 비상장사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비상장사 수시공시, 그리고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통해 하도급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분	내용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공정거래법 제2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열회사간 부당한 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책임 강화, 사외이사들의 견제 유도, 공시를 통한 이해관계인 감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 대규모 내부거래의 유형 *100억원 이상 (2023.5.30일 시행령 33조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금 ② 유가증권 ③ 자산 ④ 상품, 용역
기업집단현황 공시 (동법 제2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거래현황 등의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여 이해관계인에 의한 시장감시장치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기업은 스스로 기업집단 전체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고 포괄적으로 공개하여 투명한 경영을 실천함 기업집단현황공시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회사현황 ②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③ 주식소유현황 ④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⑤ 순환출자현황 ⑥ 지주회사현황 ⑦ 금융, 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비상장사 수시공시 (동법 제2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제도 비상장사 수시공시 적용대상 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 ②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친족)이 단독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20%이상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50%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계열회사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경우는 제외)는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공시 대상 해당 비상장사 수시공시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유지배구조 ② 재무구조 ③ 경영활동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하도급법 제13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토록 하여 2차 이하 협력사가 협상 과정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자신의 회사 내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공시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지급수단 ② 지급금액 ③ 지급기간 ④ 분쟁조정기구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기(상반기, 하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기간 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매 반기 종료 후 45일 이내 공시
위반 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거래법 제 130조(과태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4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9에 따라 위반 유형별 과태료 차등 부과 공시 유형별 과태료 부과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500만원 ~ 7,000만원 ② 기업집단현황 공시 : 100만원 ~ 1,000만원 ③ 비상장사 수시공시 : 100만원 ~ 1,000만원 ④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 100만원 ~ 500만원

8. 한페이지로 보는 『공정거래법 위반시 사건처리 절차』

공정거래법 위반시 사건처리 절차 요약

공정위 사건 처리절차



공정위 심판기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건에 대해 심판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적 기관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의 합의로 운영되는 합의회 행정기관이다.

구 분	전원회의	소회의
의 장	위원장	상임위원
의결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법 제64조 제1항)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 (법 제64조 제2항)
소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규 등의 제·개정 이의신청의 재결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 사건 (법 제59조 제1항) 입찰담합 : 계약금액 500억원 이상 부당지원 : 50억원 이상 또는 지원성규모 500억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사건 (아도급법 위반 등) 승인·인정·인가사항 집행정지의 결정 과태료 관계기관에 협조 의뢰 사항 (고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요청, 약관법상 시정요청)

공정위 조사시 행동요령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 ① 조사공무원의 공무원증과 조사공문을 확인한다.
- ② 조사가 개시되면 가장 먼저 관련 직원들에게 서류 및 이메일을 파기 또는 삭제하지 않도록 그룹웨어 게시판, 사내공문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알린다.
- ③ 조사는 조사공문에 기재된 사업장에서 조사목적 범위 및 당사의 근무시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요청한다.
- ④ 조사관이 PC자료 열람 및 복사, 책상, 서랍, 업무수첩 등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 피조사자 또는 담당 등이 입회하여 협조한다.
- ⑤ 조사 전 과정(진술조서나 확인서 작성 포함)에 변호사 등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한다.
- ⑥ 조사공무원이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는 복사를 요구한다.
- ⑦ 현장조사 이후의 사건처리절차에 대하여 문의한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
- ⑧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와의 접촉은 CP주관부서에서 주도한다.



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편람은 디엘이앤씨(주)의 구성원과 이해관계자를 위해 발간된 것으로 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편람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